

등 지침(안)은 초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案)

2011.



구강생활건강과

목 차

I. 개요	1
II.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3
1.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의 지정	3
2. 지정기준	5
III. 실태조사	8
1. 실태조사 위탁기관	8
2. 실태조사 협조의무	8
3. 실태조사 대상 기관	9
4. 실태조사 중점 점검사항	10
5. 실태조사 결과 확인 및 반영	13
IV. 전공의 정원 배정	14
1. 기본원칙	14
2. 전문과목간 순환	14
3. 병원별·전문과목별 정원 배정	16
V. 전공의 모집 및 선발	17
VI. 전공의 관리	18
VII. 치과의사전문의	21

1. 근거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 *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 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2호)
 -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7호)
 - 치과의사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0호)
 -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1호)
 -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2호)

2. 개념

-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 (이하 전공의)
 - 인턴 :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치과병원에서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1년간 수련하는 사람
 - 레지던트 : 인턴과정 이수 후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개 전문과목을 3년간 수련하는 사람

< 수련기간에 대한 특례 인정 >

- ▶ 다음의 경우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수련기간 특례 인정
 1. 軍 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 하는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역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 (수련치과병원) 복지부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
- (수련기관) 복지부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 (전속지도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
 - * (특례) 2013년 12월 31일까지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도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
-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로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이하 전문의)

3. 전문과목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과목

< 전문과목별 주요 진료내용 >

전문과목	주요 진료내용
구강악안면외과	○ 구강내 외과적 수술, 외과적 발치술 등
치과보철과	○ 각종 보철치료, 틀니 등
치과교정과	○ 각종 교정치료 (심미, 설측)
소아치과	○ 소아 및 청소년 진료
치주과	○ 잇몸질환, 잇몸치료
치과보존과	○ 신경치료, 보존치료, 총치치료
구강내과	○ 내과적 치료 원리의 치의학 도입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구강진료 관련 방사선 활용
구강병리과	○ 환자 치료에 있어 병리학적 진단 제공
예방치과	○ 전문 구강상병예방관리, 구강보건행정 등

* 상기내용은 각 진료과목별 진료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단순 나열한 것임(대한치과의사협회)

Ⅱ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1.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의 지정

- (신규 지정신청)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함

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서(별지 2호 서식)
- 의료기관 실태조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7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서(별지 2호 서식)
- 의료기관 실태조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7호)

- (수련과목 변경)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이 수련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 바람

- 수련과목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변경 신청일(1년간) 동안에 시설·설비 기준, 전속지도전문의, 환자진료실적 등 해당 전문과목의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만 수련과목 변경이 가능

예) 2011년 4월5일자로 기존 소아치과를 폐쇄하고 치과보철과를 신설하려한다면 2010년 4월5일~2011년 4월4일까지 시설·설비·인력 기준 및 진료실적이 치과보철과 설치에 필요한 법적기준을 기 충족하고 있어야 함

- 전문과목이 5개인 경우 변경하려는 수련과목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전문과목이 5개 이상이라도 변경하려는 수련과목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해당 과목 전공의 배정이 금지되므로 수련과목 변경 전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 바람

< 지침 변경예고 : 2013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면제 기준 적용 >

- (재지정) 현재는 매년 각 병원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을 재지정하고 있음
 - 시설·설비·인력 기준이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하거나 환자진료 실적 등이 월등한 병원까지 매년 실태조사와 재지정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력 및 자원의 낭비 요인
 - 3년 연속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서류심사로 대체
- * 2010~201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 후 2013년 실태조사부터 최초 적용

< 실태조사 면제 기준 >

- ▶ 실태조사 3년 연속 중대한 지적사항 없음
- ▶ 3년 평균 환자진료실적을 토대로 레지던트가 배정된 전문과목의 환자진료실적이 법정기준의 500% 초과 (총 5개과 이상)
 - *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는 1개과에 한해 법정기준의 150% 초과일 경우 인정
- ▶ 3년 평균 전속지도전문의 수와 전공의 정원을 토대로 레지던트가 배정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중 2개과 이상, 치과보존과, 치주과, 소아치과 중 1개과 이상의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레지던트 1년차 인원 대비 120%를 초과 (총 3개과 이상)
- ▶ 레지던트가 배정된 전문과목이 5개과 이상인 병원에만 적용

2. 지정기준

가.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 공통기준

구분	기준
진료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수	각 과별 1명 이상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	1. 허가 병상 수 5병상 이상 2. 연간 외래환자(실제 인원) 1,000명 이상
시설 및 기구	1. 치과용 진료의자 : 각 과별 2대 이상 2. 구강내 방사선촬영기 및 구강외 방사선촬영기 : 각 1대 이상 3. 방사선필름현상장치 4. 구강병리검사실, 의무기록실, 치과기공실, 회의실, 도서실 및 중앙소독실을 갖출 것

○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시설 및 기구
구강악안면외과	1. 수술실 및 회복실 2. 뼈 절단기, 전기 조각기, 악골골절정복 고정기구, 악교정 수술기구·구순구개열 수술기구 및 악관절 수술기구
치과보철과	1. 기공실 및 도재실 2. 평행측정기, 진공도재소성로, 소환로, 치과용 서베이어, 교합기, 유압식 가압기, 온성기, 모형트리머, 진공혼합기, 기공용 테이블, 흡진기, 기공용 엔진(2대이상), 초음파세척기, 분사연마기, 반조절성 교합기 및 치과임플란트 보철 진료기구
치과교정과	1. 기공실, 세미나실, 기록보관실 및 방사선촬영실 2. 치과진료대, 구강 및 악안면 사진촬영기(1조 이상), 모형 트리머, 두부방사선 규격촬영기, 전기납착기(3대 이상), 반조절성 교합기, 교정 플라이어 세트 및 멸균소독기
소아치과	1. 기공실, 소독실, 회복실 2. 소아전용치과용 진료의자, 신체억제장치, 사진기, 흡입마취기, 보존치료기구, 소아교정기구, 환자감시장치, 응급세트 및 구강외 파노라마 방사선촬영기
치주과	1. 수술실 및 구강위생교육실 2. 초음파 치석제거기, 전기 조각기, 치주 수술기구, 치과임플란트 수술기구, 치주근관 치료기구, 치주교정기구, 위상차 현미경, 치수검사기, 구취측정기, 교합기 및 치아동요 측정기
치과보존과	1. 기공실 2. 치수검사기, 초음파기기, 기공장비, 전기조각기, 기공기자재, 치아표백기기, 수복용장비, 근관장 측정기 및 수술용 현미경 3. 근관성형 및 근관충전 기구
구강내과	1. 물리치료실, 기공실 및 구강안면검사실 2. 근전도 기기, 하악운동분석기, 물리치료기, 구강악안면신경검사기, 압통측정기, 구취측정기, 치과용 레이저기기, 교합기, 진공성형기 및 모형트리머
구강악안면 방사선과	1. 구강내 방사선촬영기(2대 이상) 2. 방사선필름판독시설 및 PACS시설
구강병리과	1. 사진촬영실, 면역혈청검사실, 육안검사실, 조직검사실 및 판독실 2. 현미경, 원심침전기, 전기냉장고, 혈액 도말 염색시설 및 병리표본 제작 기본시설
예방치과	1. 예방치과 진료실, 공중구강보건학연구실 및 구강보건교육실 2. 초음파치석제거기, 광중합치면열구건색기, 위상차 현미경 및 인큐베이터

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 공통기준

구분	기준
진료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	1. 허가 병상 수 5병상 이상 2. 연간 외래환자(실제 인원) 1,000명 이상
시설 및 기구	1. 치과용 진료의자 : 각 과별 2대 이상 2. 구강내 방사선촬영기 및 구강외 방사선촬영기 : 각 1대 이상 3. 방사선필름현상장치 4. 구강병리검사실, 의무기록실, 치과기공실, 회의실, 도서실 및 중앙소독실을 갖출 것

○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전속지도 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구강악안면외과	2명 이상	· 퇴원환자(실제 인원) 50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	별표 1 제2호의 구강악안면외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치과보철과	1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치과보철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치과교정과	1명 이상	· 교정환자 100명 이상	별표 1 제2호의 치과교정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소아치과	1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소아치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치주과	1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 · 치주외과 처치 300명 이상	별표 1 제2호의 치주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치과보존과	1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치과보존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구강내과	1명 이상	·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구강내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명 이상	· 구강내 방사선 사진판독 6,000장 이상 · 구강외 방사선 사진판독 500장 이상 · 특수방사선 사진판독 100장 이상	별표 1 제2호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구강병리과	1명 이상	· 외래환자 생체검사 200사례 이상 · 입원환자 생체검사 40사례 이상	별표 1 제2호의 구강병리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예방치과	1명 이상	· 외래환자 1,000명 이상(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예방치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다. 예외규정

- 국공립병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 지정 가능
 - * 현재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국공립병원은 국군수도병원이 유일
- 구강악안면외과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현재 운영비 미지원) 운영, 노인틀니 사후관리 지원 등 적자를 감수하고 국민구강보건에 기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배정시 적극 배려할 예정임

Ⅲ

실태조사

1. 실태조사 위탁기관

-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2호에 의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 중

< 실태조사 위탁 현황 >

구분	자료조사	전공의 정원책정	관련 규정
의과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 가능) → 공문으로 병원협회에 위탁
한 의 과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 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한방의료관련 단체에 위탁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9호(대한한방병원협회에 위탁)
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치과의료관련 단체에 위탁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2호(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

2. 실태조사 협조 의무

-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한 업무로 각 병원은 실태조사단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2011년 실태조사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등 실태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반으로 간주하여 즉시 행정처분 실시 예정

* 실태조사 30일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 실태조사 협조 공문 발송

- 실태조사 거부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거부시에는 수련업무정지 3개월, 3차 거부시에는 수련업무정지 6개월, 4차 거부시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처분 실시

3. 실태조사 대상 기관

- 2012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을 신청한 병원
- 기 지정된 병원 중 2012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련중인 인턴 또는 레지던트가 2012년도에 존재하는 병원
- 2012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신규지정 또는 전문과목 변경을 복지부에 신청한 병원
-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 신청을 하지 않아 2년 연속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병원
 - 전공의 배정신청을 하지 않고 수련중인 전공의가 없어 2년 연속 실태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으로 실태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복지부에서 직권으로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 취소

4. 실태조사 중점 점검사항

가. 전속지도전문의

전속지도전문의가 치과의사전문의인 경우에는 실제 근무(상근)여부를, 치과의사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근무여부와 예외 인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① 전속지도전문의 상근 및 결원여부 판단

- 해당 병원에서 상시(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도 full-time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실태조사 현재 전속지도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야 함
 - * 학회, 회의, 단기 교육연수 등으로 출국시에는 출장명령서 등 증빙서 징구
- 실태조사 기간('10.1.1~'10.12.31)을 기준으로 연 3개월 이상 결원된 경우 해당 인력은 전속지도전문의에서 제외

- * 단일 인력뿐만 아니라 전임 인력과 후임(보충) 인력의 결원시기를 합한 시기가 3개월 이상이면 해당 인력은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하지 않음

< 전속지도전문의 결원여부 판단 예시 >

- ▶ A전속지도전문의가 '10.1.1~'10.8.1 근무 후 퇴직
 - 연 결원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해당 인력은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되지 않음
- ▶ A전속지도전문의가 '10.1.1~'10.5.31 근무 후 퇴직하고 후임으로 B전속지도전문의가 '10.10.1~'10.12.31 근무
 - 연 결원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해당 인력은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하지 않음
 - * 실태조사대상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한 A+B는 하나의 인력으로 간주함
- ▶ A전속지도전문의가 '10.1.1~'10.8.31 근무 후 퇴직하고, 후임으로 B전속지도전문의가 '10.10.1~'10.12.31 근무
 - 연 결원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당 인력은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
 - * 실태조사대상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한 A+B는 하나의 인력으로 간주함

② 전속지도전문의 예외 인정 여부 판단

- (7년 근무요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해당 기관장 명의의 증명서로 확인하되,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실제 해당 기관에 유선 등으로 확인 요망
- (전문성 요건) 전공의 교육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해당 전문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확인 요망
 - ▶ 해당 분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필한 자 또는 해당 전문과목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해당 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학술분야에 최소 년 1회 이상의 학술발표 또는 연구업적을 가진 자
 - * 임상연구관련 저서, 학회지 및 학술대회 논문 등
 - ▶ 학회 회원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지 말 것

나. 환자진료실적

- (진료실적 인정) 해당 전문과목별 소속 진료 치과의사(전속지도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공의)가 진료한 실적만 인정
- (입퇴원환자) 구강악안면외과 심사기준인 입퇴원 환자의 경우 2011년 실태조사(2010.1.1~2010.12.31)에는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 경과하고 입퇴원 관련 의무기록 및 입퇴원 수속을 마친 경우 인정
 - *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입원실 점유 시점으로 판단
- 입퇴원 환자가 법정기준+20% 이하(50~60명)인 경우 입원환자 여부의 적정성을 전수조사하기 바람
 - * 불확실할 경우 '불확실'로 표시하고, 추후 복지부에서 환자조사 등 재조사 실시 예정

지침변경예고 : 2012년 실태조사(2011.1.1~2011.12.31)부터는 원칙적으로 날짜를 바꾸어 익일에 퇴원한 환자만 인정할 예정임

- 연간 환자진료실적 조사
 - 연간 환자진료실적은 2010.1.1~2010.12.31을 기준으로 함
 - 환자진료의 기준은 환자의 접수일을 기점으로 함
 - * 2009.12.30에 접수하고 2010.1.3에 진료가 완료된 환자 → 2009년 환자진료실적에 포함
 - 2010.12.30에 접수하고 2011년에 진료가 완료된 환자 → 2010년 환자진료실적에 포함
 - 연간 환자진료실적은 총 진료실적과 각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으로 구분하여 점검하기 바람
 - 추후 전공의 정원 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병원측 제출 자료를 검증하여 제출하기 바람
 - * 법정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실제 진료여부, 해당 전문과목 소속 의사에게 진료받았는 지 여부, 타과 환자 여부 등을 확인 바람

다. 기타 시설설비 기준 등

- (시설설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여부 우선 확인
 - 각 전문과목별 진료공간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과목별 치과용 진료의자(Unit Chair) 구분 설치 필요
 - * 별도의 진료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파티션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
 - 병상 수(5병상 이상)은 의료기관 개설시 허가받은 병상 수를 기초로 조사하되, 실제 병상이 사용 가능한 지 여부도 확인할 것
- (인력) 치과의사, 약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인력은 의료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관련 서류) 전공의 관련 서류의 보관 여부 확인

< 전공의 관련 보관의무 서류 >

1. 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 (상시 비치)
2.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기록 (5년간 보관)
 - 별지 제4호 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3.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5년간 보관)
4.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5년간 보관)
5.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5년간 보관)
 - 별지 제6호 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 카드

-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교육 실시내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2호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준수 여부 확인
 - 실태조사위원회와 치과의사전공의간 직접 면담을 통해 해당 연수에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 지 평가
 - * 실태조사 위원은 연차별 교과내용 확인 후 치과의사전공의카드에 확인 날인

5. 실태조사 결과 확인 및 반영

- (실태조사 결과 확인) 현장에서 담당자 확인을 받고, 필요할 경우 병원측 관계자 참관 또는 동의하에 관련 서류 복사,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취득하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기 바람
- (사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논란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단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논란이 발생하는 사실 그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치협)에 제출할 것
 - 위탁기관에서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
 - 위원회 심의 후 복지부에 실태조사단 결과보고서, 병원측 반박의견 (증빙서류 포함),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함께 제출하기 바람
- (실태조사 결과 반영)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병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취함(2010년 지침에서 기 통보)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 >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연속)	3차 위반(연속)
실태조사 거부	인턴 1명, 레지던트 1명 감축	인턴 2명, 레지던트 2명 감축	인턴 3명, 레지던트 3명 감축
지정기준 미달 (환자진료실적 미달, 시설·설비·인력기준 미달)	해당과목 레지던트 1명 감축	해당과목 레지던트 1명 감축 + 타 과목 1명 추가 감축	(지정 취소)
서류보관의무 위반	경고	레지던트 1명 감축	레지던트 2명 감축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은 법령에 따라 실시함

IV

전공의 정원 배정

1. 기본원칙

- 각 병원의 신청 정원, 위탁기관(치협)의 실태조사 및 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복지부에서 최종 결정
- 졸업생 및 인턴과정 수료생, 병원들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2012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총 정원은 2011년도 대비 10% 범위내에서 조정
- 전공의 선발 및 전문과목별 순환계획에 있어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게 일정 수준 자율권 부여
- 지역의료균형 및 국민구강건강에 기여하는 병원은 정책적으로 배려

지침변경예고 : 2012년부터는 2년 연속 정원대비 전공의 미달이 발생하는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정원을 감축할 예정
→ 2012년도 전공의 모집, 2013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를 토대로 2014년도 전공의 배정부부터 적용

2. 전문과목간 순환

- 전문과목간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부터 전문과목간 순환시기를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2012년 전공의 정원 신청시 3년간(2012~2014) 순환계획을 제출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별·전문과목별 조정을 통해 병원별 전문과목 순환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미제출 병원은 적용하지 않음)
- 전문과목별 순환은 동일 그룹(A과목, B과목, C과목)내에 있는 전문과목별로 실시하되, 필수과인 구강악안면외과는 제외함

< 전문과목별 순환이 가능한 그룹 >

필수과	구강악안면외과
A과목	치주과, 소아치과, 치과보존과
B과목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C과목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예방치과, 구강병리과

< 전문과목별 순환 예시 >

(현재 배정구조)

1년차(2012년도)	2년차(2013년도)	3년차(2014년도)	계
총 3명	총 3명	총 3명	총 9명
구강악안면외과 1명	구강악안면외과 1명	구강악안면외과 1명	구강악안면외과 3명
치주과 1명	치주과 1명	치주과 1명	치주과 3명
치과보철과 1명	치과보철과 1명	치과보철과 1명	치과보철과 3명
치과교정과 0명	치과교정과 0명	치과교정과 0명	치과교정과 0명
소아치과 0명	소아치과 0명	소아치과 0명	소아치과 0명

(개정 후 배정구조)

1년차(2012년도)	2년차(2013년도)	3년차(2014년도)	계
총 3명	총 3명	총 3명	9명
구강악안면외과 1명	구강악안면외과 1명	구강악안면외과 1명	구강악안면외과 3명
치주과 1명	치주과 0명	치주과 1명	치주과 2명
치과보철과 1명	치과보철과 0명	치과보철과 1명	치과보철과 2명
치과교정과 0명	치과교정과 1명	치과교정과 0명	치과교정과 1명
소아치과 0명	소아치과 1명	소아치과 0명	소아치과 1명

※ 3개년 계획을 제출하여 위탁기관과 복지부의 심의를 받은 병원에 대해서만 인정

3. 병원별·전문과목별 정원 배정

- 전공의 총 정원, 병원별·전문과목별 정원은 치과계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하되, 위탁기관(치협)은 정원배정 논의구조에 개원의, 치과대학 병원, 비치과대학병원, 학회(구강악안면외과, A그룹, B그룹, C그룹) 등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특정 병원, 특정 전문과목에 대해 정원을 증감할 경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적용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기 바람

※ 복지부는 가급적 치과계 내부 합의를 존중할 예정이나, 논의과정에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특정 병원 및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정원의 배정 및 증감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미세조정을 시행할 예정임

< 향후 전공의 정원 배정 개정 방향(안) >

- ① 복지부와 치과계간 전문의 제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전문의 선발 인원 목표 수(총 인원, 전문과목별 인원) 결정
- ② 전문의 선발 목표 인원을 토대로 3년간 전공의 총 정원 결정
- ③ 전공의 총 정원내에서 치대와 비치대 배분 비율, 전문과목별 정원 (비인기필수학과 최소 TO 포함), 지역별 배분 비율 등 결정
- ④ 병원별 정원 배정 결정
 - 전년도 배정수, 진료환자 수, 전속과목전문의, 지역적 형평, 학문적 발전, 정책적 배려 등을 공식화하여 객관적으로 병원별 정원을 도출하는 방안 마련

V**전공의 모집 및 선발****< 추후 공고예정 >****< 지침 변경예고 : 2014년도 전공의 선발부터 적용 >**

- 2013년 12월에 실시하는 201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선발부터는 통합전형 실시 예정
 - 병원별로 상이한 전형기준을 통일하여 전공의를 공정하게 선발
 - 병원에는 전공의 미달을 최소화하고 전공의 지망자들에게는 선호도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세부안은 2011년 하반기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VI

전공의 관리

1. 수련연도

- 원칙적으로 3월 1일 ~ 익년 2월 말일 (1년간)
 -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 익년 2월 말일
- 예외적으로 복지부 승인으로 9월 1일 ~ 익년 8월 31일 (1년간)
 - 전공의 선발 대상자가 없어 하반기 추가모집을 한 경우
 - 전공의 대상자가 중도 포기하여 하반기 추가모집을 한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 별지 1호 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해 7월 31일 까지 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인정

2. 여성전공의의 출산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전공의에게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전공의 수련기간 중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1회 사용 90일까지는 추가 수련이 없이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 1회 90일을 초과하여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 수련 필요

3. 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 아래의 경우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 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가 해당 수련 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할 것

4. 타과 파견

- 인접 타과 및 인접 임상과 :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인접의 의미가 없으므로 전국적 단위로 확대 (전국 모든 병원으로 파견 가능)
- 파견 기관은 수련기관(의과)으로 인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한함
- 타과는 해당 전문과목과 관련이 있는 과목에 한함 (해당학회에 문의)
-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은 타과 파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예측가능성 있게 파견을 실시하고, 파견이 가능한 타과 병원의 리스트를 사전에 전공의들에게 제공하기 바람
- 한번에 많은 인력이 파견되어 병원내 치과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연도별 파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가능 과	가능 범위	대상
구강악안면외과	인접 타과 2개월내 파견 (권장)	1,2,3년차
소아치과	소아과 또는 마취과	1년차
구강내과	학회 승인을 얻은 후 수련병원 해당 규정에 따라 가능	1,2,3년차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치과 임상 관련과 또는 진단방사선과 또는 치료방사선과	1,2,3년차
구강병리과	1년차 : 구강외과 또는 관련 임상과, 해부병리과 또는 임상 병리과 및 기타 임상과(의과계) 2년차 : 해부병리과 또는 임상병리과, 인접 임상과(택 1) 3년차 : 인접 임상과 3개월 (권장)	1,2,3년차

5. 기타

-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수련에 관한 지도·감독, 해임 등에 관한 통상적인 권한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장에게 있음
- 치과의사전공의는 전공의 수련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함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복지부장관 확인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함
- 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고 수련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요구시 적극 협조하기 바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Ⅶ

치과의사전문의

1.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시험

- 응시자격 : 치과의사로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 시험관리주체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
- 실시시기 : 매년 1회이상 실시 (추후 공고)
 - * 치과의사회의 장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함
- 합격기준 : 1차시험(필기시험), 2차시험(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의 총점이 각각 총점 60%이상을 득점한 사람 합격
 - * 1차시험 합격후 2차시험 불합격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1차시험 면제

2.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 표시

- 복지부장관은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
 - 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
- 의료법 제77조에 의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자는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하며(유사명칭도 포함),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도 아래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표시 가능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 * 간판 및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나, 의료기관 내부에 통상적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게시하거나 원장 약력란에 다른 경력과 동일한 크기로 전문의 취득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